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화 : 2094-0470~5



제1628호 2010. 3. 29

훈 령

제14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2
 제14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축구단 운영 규정 4

공 고

제2010-223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8

인사발령

기술직 공무원(건축) 인사교류(전입) 10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훈 령

서울특별시중랑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0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대외직명 적용대상은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기능직 · 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 나.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함(안 제4조)
- 다.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명함 등 대외직명 사용범위를 정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대외 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중랑구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축구단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0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축구단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 축구단 창단으로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 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축구단 구성 - 단원 25명 이내, 별도로 감독 1명 코치 2명을 둠(안 제3조)

다. 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기준 마련(안 제4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축구단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창단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대외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구 홍보사절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건전한 여가를 통하여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축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축구단과 본인의 기술(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축구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축구단 조직) ① 축구단 정원은 단원 25명 이내로 하고 별도로 감독 1명, 코치 2명을 둔다.

② 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단원 중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총무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만 24세에서 만 38세까지의 전직 축구선수 출신이나 축구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은 단원의 전형을 축구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의 위촉) ① 감독은 국민생활체육중랑구축구연합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코치는 축구선수 출신이나 축구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에서 축구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 기간) ① 감독, 코치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위촉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해단행위를 한 경우
3. 단원 간의 화합과 친목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유 없이 훈련을 거부하거나 분기별 총 연습 횟수의 1/2이상 불참한 경우
5. 타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총무의 임무) ① 총무는 단장의 지휘를 받아 축구단 운영에 관한 재정·업무·연락 등 실무처리와 단원화합에 힘써야 한다.

② 총무는 단장을 보좌하며 축구단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문화체육과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축구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제10조(재정) ① 구청장은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실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총무는 예산집행 후 매 분기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 축구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구에 귀속되고 부상품은 축구단의 발전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업무관장) 축구단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단장의 지시 하에 문화체육과장이 관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축구단은 이 규정 제3조로 조직된 것으로 본다.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10-223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2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교육일시

- 1) 신규교육 : 2010. 7. 5(월) 09:00~16:00(6시간)
- 2) 보수교육 : 2010. 7. 6(화)~7. 9(금) 09:00~12:00(3시간)

2. 교육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서울 송파구 신천동7-11)

3. 교육의 종류·시간·내용 및 대상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관계법규 - 3시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표시에 관한사항-3시간(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종사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 신고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을받은 자에 대한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3시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관계법규 - 3시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옥외광고업자(대표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함.			

4. 교육비

- 1) 보수교육 : 20,000원(교재비 별도)
- 2) 신규교육 : 40,000원(교재비 별도)

인사발령

기술직 공무원(건축) 인사교류(전입)

2010. 3. 20.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박영석	중랑구 전입을 명함 도시환경국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시설주사 (건축, 승예)